

한국 사회 노인학대(Elder Mistreatment) 현황과 정책 쟁점

이미진 교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사회복지학과

mleegwb@kku.ac.kr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노인학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서구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사회문제라고 여겨져 왔다. 노인학대는 국제적인 문제였지만 한국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인식되지 못하였다. 1994년 노인학대에 대한 국내 논문이 최초로 발표되었다. 이후 몇몇 연구자들이 노인학대 문제가 한국사회에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민간기관인 카리따스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어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을 개시하자 예상외로 노인학대사례의 접수가 많이 이루어졌다.¹ 이후 2002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되었고, 노인학대상담센터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² 그 결과 2003년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이후 2005년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7개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 노인학대 현황을 가정내 학대와 시설 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노인학대예방대책의 현황 및 쟁점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노인학대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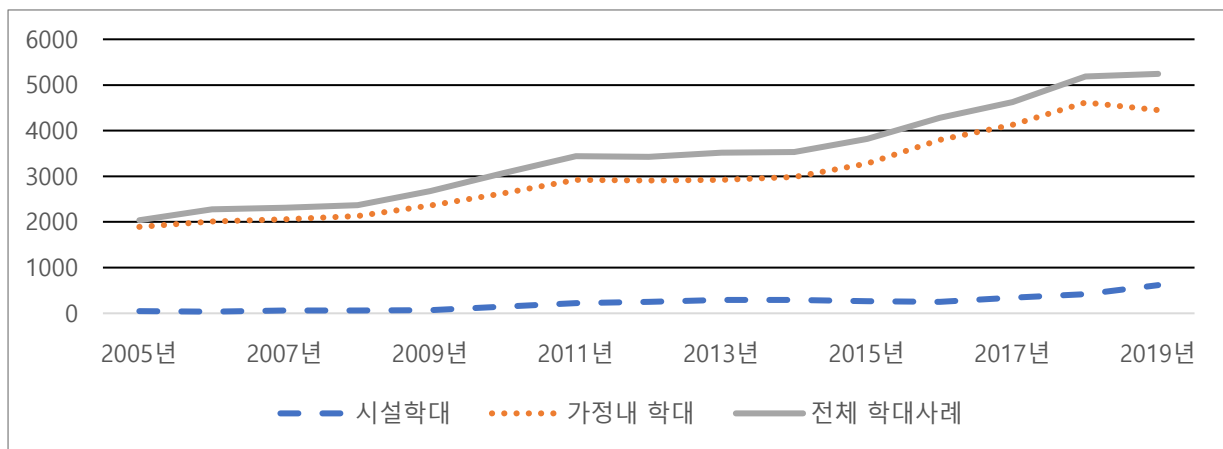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의 증가: 가정내 학대 vs. 시설 학대

한국의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neglect by others), 유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의 학대 유형에 더하여 자기방임(self-neglect)까지 포괄하여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2014 년과 2017 년 전국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약 10%가 지난 1 년간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4} 시설학대 발생율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신뢰할 만한 연구는 드물며, 연구마다 발생율과 목격율의 편차가 크다.⁵

[그림 1]에서 보듯이 노인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된 2005년에는 2,038 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접수되었으나 2019년에는 5,243 건의 신고접수가 이루어져 신고접수의 증가는 약 2.6 배에 달하였다.⁶ 이런 증가추세는 노인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를 상회하는 것이다.⁷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발생장소에 따라서 노인학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정내 학대, 생활시설 학대, 이용시설 학대, 병원 학대, 공공장소 학대로 구분된다. 생활시설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지칭하며, 이용시설 학대는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등)과 재가노인 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뜻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생활시설 학대와 이용시설 학대만 시설학대에 포함시켜 통계를 집계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그림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사례의 추세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체 신고된 사례 중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이지만 이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5년 92.9%에서 2019년 84.9%로 하락함). 노인학대사례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는 시설 학대는 2005년 51 건에서 2019년에는 617 건으로 약

12 배 늘어났다. 이는 2008 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⁸ 이에 따라 시설 학대의 신고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가정내 학대 현황

2015-2017 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가정내 노인 학대 종결사례를 분석한 결과⁹ 를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의 절대 다수는 정서적 학대(73.7%)와 신체적 학대(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는 12.2%, 방임은 15.3%이었으며 자기방임(7.6%), 성적 학대(2.0%), 유기(1.0%)의 비중은 낮았다. 가정내 학대의 특징은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이미진, 김혜련(2016)¹⁰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2 가지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난 사례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서¹¹에서는 신고된 가정내 학대는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체 사례 중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15.4%), 1 주일에 1 번 이상이 27.9%, 1 개월에 1 번 이상이 27.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지속기간 5 년 이상이 33.8%에 달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2015-2017 년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내 노인 학대 종결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해노인의 평균연령은 76 세(SD=7.64 세)였고, 여성노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74.4%).¹²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 약 60%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노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한국 사회 노인들의 낮은 교육수준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¹³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는 비율은 19.1%에 달하여, 전국 노인의 수급자 비율인 6%보다¹⁴ 훨씬 높았다. 가구형태 중 가장 빈번한 형태는 자녀 또는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46.4%)로 일반노인에 비해 자녀 또는 손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¹⁵ 학대피해노인 중 장애가 있는 비율은 12.5%,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은 20.4%에 달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2016 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치매유병률을 7.2%로 추정하고 있는데,¹⁶ 이와 비교할 때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2017 년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내 노인 학대 종결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남성인 경우가 훨씬 많았고(77.4%), 평균연령은 58 세(SD=15.79 세)에 달하였다.¹⁷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39.7%)과 전문대졸 이상(17.7%)이 절반을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차이는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자녀로¹⁸ 이들의 교육수준은 부모세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학대행위자 중 수급자 비율은 13.6%이었으나 약 2/3 가 직업이 없었고 무배우자 비율도 47.4%에 달하였다. 또한 유년기 학대경험이 있는 비율은 1.5%,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는 2.6%에 달하였다. 학대행위자 중 장애, 치매 의심 및 진단, 중독장애 의심 및 진단을 받은 경우는 각각 13.6%, 9.1%, 20.2%에 달해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정내 학대사례 중 일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반복적으로 신고·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규로 접수되었던 잠재사례¹⁹ 648건에 대해 2017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28건(4.3%)이 재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종결된 사례²⁰의 종결사유 분석을 보면, 피해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사망이 2.7%, 피해노인 분리 17.9%, 학대행위자 분리 11.7%, 상황개선 47.1%, 서비스 제한 7.3%, 개입거부 11.3%, 의뢰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설 학대 현황

2019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²¹를 보면 시설 학대의 대부분(70%)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시설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42.8%이었고, 비신고의무자 21.4%, 관련기관 19.6%, 친족 15.2% 등의 순서로 신고비율이 높았다. 시설의 유형별로 노인학대 유형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 학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학대만 보면, 방임(36.5%), 신체적 학대(21.2%), 성적 학대(20.8%), 경제적 학대(11.3%), 정서적 학대(10.3%)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가정내 학대와 비교할 때 성적 학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 학대의 지표인 기저귀 교체 시 신체부위 노출로 학대판정을 받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2019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보고된 시설학대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 비중(69.5%)이 높았고, 피해노인의 연령대는 80-84세와 85-89세가 각각 24.5%와 2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성이 약 3/4를 차지하였고, 50대(46.6%)와 60대(28.0%)가 다수를 이루었다. 이는 시설 종사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고연령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설내 학대를 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는 33.1%이었지만 매일 발생된 경우는 34.5%, 1주일에 1번 이상은 17.5%로 절반 이상이 매우 빈번하게 학대피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학대지속기간 역시 1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 31.3%, 1 년 이상에서 5 년 미만이 26.6%, 5 년 이상이 5.8%로 나타나 1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피해를 받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15.3%로 가정내 학대와 비교할 때 다소 낮았다(19.1%).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로 의심되는 경우는 8.9%,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는 51.1%에 달하였다.

4) 노인학대의 특징: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과 비교

이전 생애주기에 학대 및 폭력에 노출된 경험(아동기 학대, 가정폭력 목격, 트라우마 등)은 이후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2 23}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기 학대 등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많이 경험한 기혼성인은 노부모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았다.^{24 25 26 27} Pillemer(1986)²⁸ 는 아동학대피해를 받고 자라난 성인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학습의 결과일 수 있지만, 노부모에게 학대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의 모방이 아니라 보복을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노부모학대를 행한 성인자녀에게 처벌 위주로 개입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노인학대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은 배우자폭력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녀,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가정내 노인학대나 시설학대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혼인관계의 단절로 배우자폭력이 종료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혈연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관계단절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 신고 기피, 행위자와의 분리의 어려움 등이 가중된다.²⁹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학대 가해자의 19.3%는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³⁰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틀로 개입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 있어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이 강조되며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아동의 의사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이 보다 중요시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비해 개입에 있어 노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노인이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우국희(2008)³¹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대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노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판정될 때 비자발적 입소와 같은 온정주의적인

접근(paternalistic approach)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국희(2008)의 연구는 십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 현장전문가의 인권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실천현장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제한적인 개입(least restrictive intervention)과 자기결정권 존중의 실천 원칙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노인학대사례 개입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법에 명시된 것처럼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별로 비교적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2005년 17개소에서 2019년 34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2020년부터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업무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2020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입한다.³²

1) 가정내 학대사례 개입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4시간 365일 온라인 및 전화 등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초기 접수단계에서 응급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24시간 이내에 또는 72시간 이내에 할 지가 결정된다.³³ 현장조사시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가족 등을 인터뷰하고 사정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조사 및 사정업무에 기초하여 사례의 학대판정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판정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학대사례로 판정되면³⁴ 서비스 개입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를 평가한 후 종결지표의 적용 및 종결회의를 통해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종결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수행된다.

2) 시설학대사례 개입절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노인학대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아서 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의뢰, 신고, 이관 등으로

접수된 시설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기초정보 및 학대상황을 파악하고 자체사례회의 등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학대발생 의심시설을 현장방문하여 피해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정도를 확인하고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시설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응급조치 등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동행조사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자체사례회의 또는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사례판정서 및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례판정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평가와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3. 노인학대예방대책의 현황 및 쟁점

1) 노인학대예방대책 현황 및 문제점

한국사회의 노인학대예방대책의 핵심은 2014 년과 2016 년에 발표된 노인학대방지대책에 담겨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중심의 예방체계 구축,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시설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이 포함되어 있다. 부연 설명하면, 지역사회에서 경찰,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119 등 다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사례를 조기발견하고, 신속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확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지원 및 돌봄서비스 연계를 추진해 왔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권고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정서적, 경제적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등이 이루어져 왔다.

노인학대예방대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역사회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주요 기관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한 미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쉼터의 단기 거주 및 주거지원 등 피해자 보호의 미흡함; 시설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문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및 평가제도와 관련한 대책의 미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지원 부족 및 상담원의 열악한 처우 등이 포함된다.³⁵ 다음에서 중요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 부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복지법 개정 또는 노인학대특례법 제정

한국사회의 노인학대예방대책은 행위자처벌보다는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행위자처벌과 같은 사법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가칭 노인학대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대책의 효과성을 증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이후 여러 번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동학대를 ‘범죄화’하여 대응하는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특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적인 쟁점 사항은 이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³⁶ 제 19 대와 20 대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가칭 노인학대특례법의 제정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였다. 다만 노인학대특례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는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³⁷

글쓴 이는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 조항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화되지 못하여 노인복지법의 전문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 인상 지원 및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대한 안전보장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기준의 변경 및 강화(예를 들면 변호사 배치 의무화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강화 등) 역시 법 개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노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응급서비스(의료, 상담,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현행 법령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노인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가정내 학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보호기간 연장 및 관련 주거대책 수립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이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야 한다. 학대피해노인이 본래 거주하던 집에 머물고 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학대행위자를 격리 또는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학대행위자가 거주할 공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예: 행위자 전담 감호시설). 현재

노인학대예방대책을 보면,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단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데, 이 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3 개월(1 개월 연장 가능)로 제한되어 있다. 국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 개월 거주(최대 1 년)가 가능하고, 장기보호시설에서는 2 년 거주가 가능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단기간 입소와는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학대피해노인이 전용쉼터에 입소한 이후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이는 이들이 재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장기적으로 분리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시설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 보장 강화

시설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뿐만 아니라 관련 법(예: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아동보호와 달리 실질적인 조사는 민간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몇몇 장기요양기관들은 코로나 방역 등을 핑계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과 제도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수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설학대에 한정하여 시설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에 대한 거부 이력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시 감점을 부여함.

4. 결론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불행스럽게도 노인학대신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인학대신고의 증가가 실제 학대발생이 증가해서인지, 아니면 인권감수성이 제고되면서 마치 빙하 밑에 은폐되었던 학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가정내 학대사례 신고가 2005 년부터 2019 년까지 2.4 배 증가하였던 반면, 동기간 시설학대는 12 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노인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인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이 부상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가정내 학대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발굴이 용이하지 않고, 오래된 가족력에 기인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해 재학대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또한 학대행위자를 범죄화하는 접근은 대부분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다.³⁹ 한편 대다수의 시설학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므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고,⁴⁰ 조사권의 강화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노인학대예방대책의 성공은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수많은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은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역시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글쓴 이는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고,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노년기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에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약을 제정하였던 것처럼 노인권리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노인권리협약을 제정하고 한국이 이를 인준한다면 노인학대예방에 필요한 기초인 노인인권이 증진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¹ 최재향(2002). 노인학대/상당노인 75%, "학대받고 있다", 한겨레2002년 7월12일,

http://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PRINT/535075.html

² 이연호(2004). 한국노인학대개입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인간관계학보, 9(1), 237-260.

³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⁴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2017). 2017년도 노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⁵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⁶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⁷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5, 2019)를 보면 2005년 65세 이상 인구는 438만명이었고 2019년에는 768만명으로 동기간 1.8배 증가하였다.

- ⁸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5년 583개소에서 2019년 5,529개소로 약 9.5배 증가하였다.
- ⁹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산출하여 가정내 학대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고한 이미진, 백민소, 양호정, 송영신(2018)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 ¹⁰ 이미진, 김혜련(2016).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53-89.
- ¹¹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산출하여 가정내 학대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고한 이미진, 백민소, 양호정, 송영신(2018)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 ¹²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산출하여 가정내 학대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고한 이미진, 백민소, 양호정, 송영신(2018)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 ¹³ 정경희 외(2017)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62.5%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¹⁴ 통계청(2018). 고령자통계.
- ¹⁵ 2017년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3.7%이며, 손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4% 미만으로 추정된다(정경희 외, 2017).
- ¹⁶ 김기웅 외(2016).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중앙치매센터.
- ¹⁷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산출하여 가정내 학대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고한 이미진, 백민소, 양호정, 송영신(2018)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 ¹⁸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의 2019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의 관계는 본인(3.5%), 친족(74.2%), 타인(3.9%), 기관(18.5%)으로 나타났다. 친족 중 아들이 4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40.8%), 딸(10.2%) 등의 순서로 많았다.
- ¹⁹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정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대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뜻한다.
- ²⁰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2018)의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의 종결사례에 대한 통계이다.
- ²¹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²² 최정혜(2000). 성별에 따른 노인부부폭력 차이연구. 한국노년학, 20(3), 17-35.
- ²³ Acierno, R., Hernandez, M. A., Amstadter, A. B., Resnick, H. S., Steve, K., Muzzy, W., & Kilpatrick, D. G. (2010).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motional, physical, sexual, and financial abuse and potential neglect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Elder Mistreatment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2*, 292-297.
- ²⁴ 류정희, 이주연, 정익중, 송아영, 이미진(2017).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²⁵ 이현주(2013).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 분석 활용 -. 사회과학연구, 29(3), 409-431.
- ²⁶ Band-Winterstein, T., & Eisikovits, Z. (2009). "Aging out" violence: the multiple faces of intimate violence over the life sp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9*(2), 164-180.
- ²⁷ Finfgeld-Connett, D. (2013). Intimate partner abuse among older women: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Clinical Nursing Research, 23*(6), 664-683.
- ²⁸ Pillemer, K. A. (1986). Risk factors in elder abuse: result from a case-control study. In K. A. Pillemer, & R. S. Wolf(Eds.),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pp. 239-263). Dover, MA: Auburn House.

- 29 양호정, 송영신, 이미진, 백민소(2019). 노인학대 사례개입과정에서 피해노인의 안전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거이론 방법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6, 1-29.
- 30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산출하여 가정내 학대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고한 이미진, 백민소, 양호정, 송영신(2018)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 31 우국희(2008). 노인학대 유형으로서 자기방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관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0, 195-224.
- 3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2020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제 2권 사례개입매뉴얼.
- 33 접수판정시 응급여부 판정을 위해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한다.
- 34 응급과 비응급사례만이 학대사례에 포함된다.
- 35 임정미, 김혜수, 임성은, 이미진, 박홍재, 손희숙, 장미야(2020).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 전략 모색.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6 제철웅(2015).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하며. 성년후견, 3, 141-178.
- 37 강동욱(2019b).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22(2), 209-248.
- 38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매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산출하여 가정내 학대에 대한 최근 통계를 보고한 이미진, 백민소, 양호정, 송영신(2018)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였다.
- 39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함으로써 재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 40 현재 노인인권지킴이(옴부즈맨) 사업의 수행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사정에 따라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인권지킴이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